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1.05.18)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펀드코드: C8681]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KB 코스닥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단위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모집[판매] 기간	2018년 05월 10일부터 2018년 05월 18일까지 (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06월 10일	존속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까지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가입자격	-	인터넷가입자	-	인터넷가입자 펀드한정 판매사의 인터넷시스템 가입자			
선•후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	-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18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보수 [연, %]	판매	0.600	0.300	1.000			
	운용 등	0.685(집합투자업자보수: 0.640, 신탁업자보수: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기타	0.001	0.000	0.000			
	총보수•비용	1.286	0.985	1.685			
주석사항		※ 상기 종류 외 C-F 및 C-S 클래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 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수는 보수계산기간(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의 종료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지급합니다.					

매입 방법 (자금납입일 기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2018년 05월 18일)의 기준가격	환매 방법 (환매청구일 기준)	15시 30분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대금 지급
기준가	1,000좌당 1,000원 ※ 산정방법: 펀드순자산/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 * 1,000(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증권·증권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상세설명
주식	100%이하 - 가 및 나: 합산하여 50%이상 - 가: 15%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동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증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기업의 주식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한다)

※ 위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KOSDAQ 지수:** 코스닥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1997년 1월 3일부터 산출·발표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산출되는 지수임
- **KOSPI 지수:**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수임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주식(이하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등에 주로 투자하면서 시황에 따라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의 주식에도 일부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신주, 구주) 및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는 투자신탁 재산의 50%이상 투자하며, 이 중 벤처기업 공모주(신주)에 15%이상 투자합니다.

1) 코스닥 벤처기업 주식 투자 전략

- 산업의 성장 잠재력, 상대적인 경쟁우위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확장의 용이성 등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및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
-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혁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2) 벤처기업 공모주(신주) 투자 전략

- 코스닥시장에서의 IPO와 유상증자 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30%이상 우선배정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 기업 내재가치 분석 및 성장잠재력 분석을 통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공모주에 투자
-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 또는 의무보유기간^{주)} 종료 후 단기간에 매도하여 조기 수익화정을 목표로 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고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및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펀드 총자산의 15%이상 유지할 계획
-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공모주(신주)를 15%이상 투자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배정받은 공모주는 상장 이후에도 가치 변동에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음

^{주)}공모주 투자 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상기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및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6개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에도 일부 병행 투자하며, 편입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성장 산업군 내에서 매출 또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대형주 중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 비상장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주식 관련 자산 투자 이외의 자금은 채권, 기업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 운용전문인력

(2021년 05월 1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펀드 수	자산규모
남은영	1987년	책임	10개	1,803억
윤태환	1983년	부책임	9개	1,730억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세전 기준, 기준일: 2021년 05월 18일,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47.35	2.26	-16.40	-	-
비교지수	43.96	-3.28	-15.22	-	-

※ 비교지수: KOSDAQ 지수*50% + KOSPI 지수*40% + 콜(KRW)*10%

※ 비교지수 수익률에는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협 의 주 요 내 용
원본손실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준수의무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① 및 ②)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해당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부재, 공모주 물량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및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정받은 공모주 등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상당히 오랜기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가격하락시 매도하지 못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50%이상 투자 ② 벤처기업 신주에 15%이상 투자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기업 등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 중 기술력 또는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생기업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여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및 유동성부족 위험과 신용위험 등에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일부 투자합니다. 공모주는 기존의 주식보다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의무보유(Lock-up)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가격이 하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후 해당 공모주가 상장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해당 공모주의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동 기간 이 투자신탁의 해지 등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 내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은 시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소형주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 (1) 담당 운용부서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 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3) 기본적으로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과정을 중시하고 유연한 시장대응으로 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기업(내부/외부 리서치 활용 및 신용평가기관 업무협정)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자료 등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4) 주식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의 운용전략회의를 통해 선정한 Universe(투자후보종목 군)에서 투자종목선정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5)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2) 투자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계약 기간	3년 이상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 기한 -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 그 외의 투자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감면 세액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투자신탁 투자일(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투자신탁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투자신탁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 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제 혜택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